

# 노인보건시설 크레오

Kureo

오 은 진  
Oh, Eun-Jin



## 1. 시설개요

- 운영법인 : 의료법인 社団 創造會 (Sozokai)
- 개원일 : 2007년 3월
- 정원 : 입소 100명 (일반 50명, 인지증 50명) - 쇼트스тей 포함, 데이케어 20명
- 형태 : 일부 유니트형 - 요양실 전실 개실(유니트형 개실 85실, 종래형 개실 15실)
- 위치 : 치바현 我孫子(아비코)시 我孫子 1855-4
-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지상 4층
- 설계 : I. C. D. (Institute of Creative Design) 건축설계사무소

노인보건시설 크레오는 동경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치바현에 위치한 시설로 전원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교류를 위한 시설 내 레스토랑 및 차를 마실 수 있는 별동 건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의료실 및 거택개호지원사무소 등 다양한 재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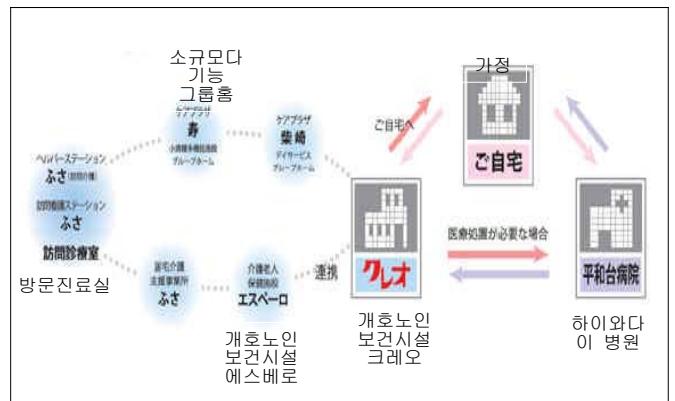


그림 1.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 2. 시설 특징

### 2.1 지역사회 밀착형 노인보건시설

노인보건시설 크레오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생각하여 외관에서도 노인시설의 이미지를 줄이고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정원에 Tea Room을 설치하여 시설과 지역 간의 거리를

표 1. 일본노인보건시설의 설치기준

		종래형	유니트형	일부유니트형
시설이 성격과 대상자	개호보험법에 의한 개호노인보건시설서비스 대상이 되는 요계호고령자 간호와 의학적 관리하에서의 개호, 기능훈련, 필요한 의료를 행하면서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주는 시설			
개설자	지방공공단체,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자			
정원	규정 없음			
서비스내용	<입소서비스> - 회복기에는 보행재활 - 일상생활동작훈련 - 체위변환, 청소, 식사도움, 입욕 등 간호 및 개호서비스 - 비교적 안정된 병환에 대한 진료, 투약, 주차, 검사, 처치 등 의료케어 - 이발 등 개인적인 도움, 교양오락을 위한 행사 등 일상생활 서비스 <거택서비스> - 단기입소요양개호, 개호예방단기입소요양개호 - 통소재활, 개호예방통소재활			
비용지급	- 개호보험으로서 시설개호서비스료가 지급됨 - 이용자는 개호보건시설서비스료의 10% - 식대, 주거비, 이미용비 등 입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상 인정되는 일상생활비			
설치 기준	실 정원	4인 이하	1인(입소자에서 서비스 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인)	
	1인당 거실면적	8㎡이하(세면대, 수납 포함, 화장실 불 포함, 법적유효면적) *1, 3	13.2㎡이상(세면설비포함, 변소제외, 법적유효면적) 2인실의 경우 21.3㎡이상 유니트형준개실(개조)의 경우 10.65㎡이상	
	요양실	지하설치 금지 몸을 돌리는 물품을 관리하는 설비, 너스콜 등	유니트 (유니트1개당 입소정원은 원칙적으로 10인 이하, 다른 유니트입소자가 거주하는 생활실을 통과하지 않고 시설내 다른 장소로 이동가능)	유니트의 공동생활실에 근접해서 일체형으로 설치 지하설치 금지 몸을 돌리는 물품을 관리하는 설비, 너스콜 등 공동생활실 : 유니트입소정원1인당 2㎡ 이상
	식당	입소자 1인당 2㎡이상 *1		요양실마다설치하는것이 좋음. 공동생활실
	세면설비	요양실이 있는 층에 설치	요양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생활실에 적당한 수로 분산 설치 가능	
	화장실	요양실에 있는 층에 설치 부저, 야간등 설치		
	욕실	개호자가 입욕하기에 적합하도록 설치	요계호자가 입욕하기에 적당한 것, 거실이 있는 층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찰실	설치	설치	
	조제소	설치 *2	설치 *2	
	기능훈련실	입소자1인당 1㎡이상, 법적 유효면적 서틀라이트형소규모, 의료연계병설형소규모의 경우 40㎡이상)	입소자1인당 1㎡ 이상, 법적유효면적 서틀라이트형소규모, 의료연계병설형소규모의 경우 40㎡ 이상)	
	담화실	설치	설치항목 없음	
	레크리에이션 룸	설치	설치항목 없음	
	서비스스테이션	요양실이 있는 층에 설치	요양실이 있는 층에 설치	
	조리실	설치	설치	
	세탁실	설치	설치	
	오물처리실	설치	설치	
	기타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	가족상담실, 자원봉사자실, 가족개호교실 등	가족상담실, 자원봉사자실, 가족개호교실 등	
엘리베이터	요양실 등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요양실 등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피난계단	요양실 등이 3층이상에 있는 경우 2개 이상	요양실 등이 3층이상에 있는 경우 2개 이상		
복도	편복도 1.8m 이상, 중복도 2.7m이상(손잡이 포함) *4	편복도 1.8m 이상, 중복도 2.7m이상(손잡이 포함) 복도일부를 확장하는 경우 입거자, 직원등이 원활히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편복도 1.5m, 중복도 1.8이상 *4		

1. 경과지침에 의해 현행기준 시행이전에 개설한 시설의 경우 의료실면적, 식당면적, 엘리베이터설치, 복도폭 등은 완화기준이 있음  
 2. 조제소의 설치에 관해서는 소령이 정하는 시설에는 규정이 없지만 조제사가 제조를 행하는 경우 조제사법의 규정에 의해 조제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요양병상 등을 개호노인보건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14년(평성24년) 3월 31일 까지 6.4㎡ 이상임  
 4. 요양병상 등을 2014년 3월 31일까지에 개호노인보건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편복도 1.2m, 중복도 1.6m 이상

좁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오픈 된 Across 레스토랑은 입주자와 외부 고객을 위한 프랑스식 음식제공과 주기적인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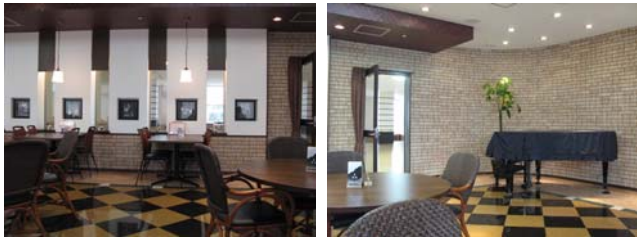


그림 2. 지역사회에 오픈 된 Across 레스토랑



그림 3. 정원의 Tea Room

정원에 위치한 Tea Room은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 되어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용 가능하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림 4.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배려 시설

### 2.2 일부 유니트형 노인보건시설

2006년에 일본 개호복지법의 노인보건시설 설치기준이 특별양호홈과 노인보건시설 간의 차이가 없도록 개정되었으나, 노인보건시설 크레오는 2007년에 개원하였으나 설계당시에는 법 개정 이전에 설계가 진행되어 85개실은 개정된 기준에 맞춘 유니트 개실로 15개실은 종래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노인보건시설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종래형과 유니트형, 크레오와 같은 일부 유니트형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법 개정 이전에 개원한 시설은 모두 유니트형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트형 또는 일부 유니트형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7개의 요양실과 간호사스테이션으로 이루어진 종래형 개실 부분

그림 5. 유니트 형과 종래형의 복합사례

크레오에서는 설계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 일부 유니트 형을 선택하였는데 의료법인의 특성상 간호스테이션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으며, 개호직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니트와 종래형이 복합이 효과적이라는 전제하에 계획되었다.

### 2.3 유니트의 구성

유니트의 구성은 이 시설의 설계 특성상 유니트 거실의 위치가 각각의 유니트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 일부 유니트는 거실(공동생활실)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시야가 차단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유니트에 2개의 공동생활실이 있는 것은 입주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공용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하고 있다.



그림 6. 크레오 2, 3층 평면도

현재 2층에는 4개의 유니트(9실, 10실, 12실- 2유니트)와 종래형 개실 7실로 이루어져 있다. 3층에서는 각 9실, 10실, 11실, 12실의 4개 유니트와 종래형 개실 8실로 이루어져 있다. 2층에는 인지증(치매)환자가 3층에는 일반 요양환자가 거주하고 있으나 일반 요양실에 세면대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시설 면에서의 큰 차이



오은진

는 없다.



그림 7. 유니트 표식과 공동 거실

유니트의 복도는 종래형에서는 유니트 형보다 더 넓은 복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크레오의 계획에서는 곳곳에서 복도의 폭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시설적인 느낌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림 8. 종래형 개실 공동거실

복도의 폭에 변화를 줌으로 복도의 길이가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 공용화장실의 경우도 세면공간의 벽을 사선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보다 여유 있는 공간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



그림 9. 복도폭 변화 세면대 공간계획

#### 2.4 요양실

요양실은 전실이 개인실로 되어 있으며 개실의 크기는 13.23m<sup>2</sup>에서 15.61m<sup>2</sup>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개인 욕실은 3층에 4개의 실에만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은 각 유니트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 5~6인당 1개의 비율로 설치되어 있다. 각층에 1개소의 공동 욕실이 설

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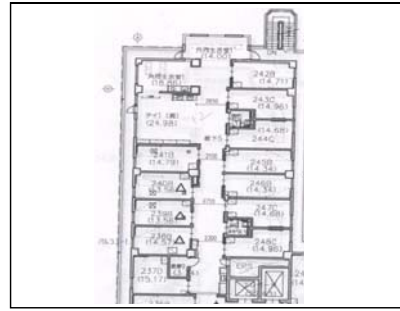


그림 10. 요양실과 부속화장실 구성

개인요양실은 다른 보건의설에 비해서는 넓은 편이었으나 침대 이외에는 책상, 의자등 기본적인 가구만 배치할 수 있으며, 개인 가구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침대의 배치도 3면 접근보다는 벽에 붙여 놓아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림 11. 개인요양실과 부속화장실

### 3. 데이케어 및 재활치료 공간

크레오에서는 20명 정원의 데이케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층에 정원에 면한 곳에 위치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데이케어의 직원은 현재 4~5명으로 법적 기준보다 많은 직원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케어 공간은 프로그램실과 기계육이 가능한 욕실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사용가능한 탈의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입구 부분은 라운드로 디자인되어 있는 계단실과 화장실부분에 락카를 설치하여 데이케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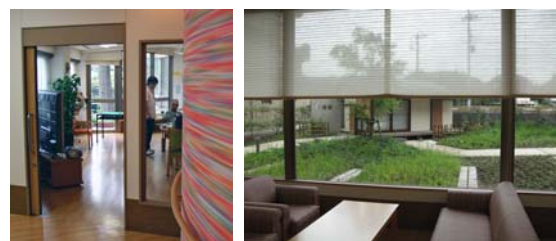


그림 12. 데이케어 출입구와 휴식공간

재활치료공간은 데이케어와 인접하게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재활치료사는 시설의 경우는 100명당 1명, 데이케어는 20명당 0.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으나 크레오에서는 물리치료사 2명과 작업치료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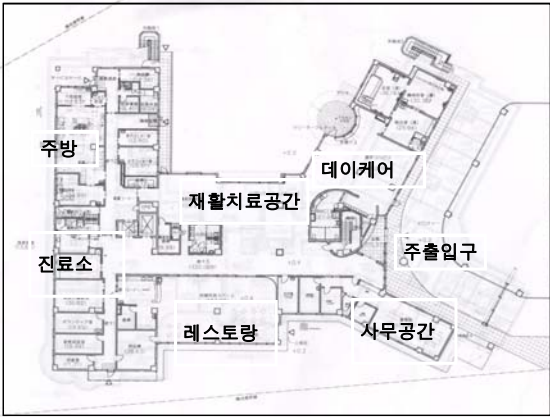


그림 13 . 1층의 데이케어와 재활치료공간

재활치료 공간은 모두 오픈이 되어 있어 집중적인 치료에는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명의 입주자와 20명의 데이케어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타 시설과 비교하여 좁은 편이다. 공간적인 배치는 중정에 면하여 치료중에 이용자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4. 재활치료공간

주출입구의 디자인은 라운드 형의 계단실을 이용하여 옆으로 어프로치를 하도록 하여, 데이케어 공간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면서 보다 친근한 느낌으로 레스토랑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되어있다. 복도 공간에도 그림을 전시하여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고 있다.

사회와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할 수 있다고 한다. 크레오에서는 건물 계획에서 개호보험 실시 이후에



그림 15. 주출입구 디자인

#### 4. 직원 및 서비스 공간

4층은 직원과 취미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개호보험 실시 이후 좋은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을 위한 복지 공간을 배려하고 있는데, 크레오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직원라운지를 옥상 휴식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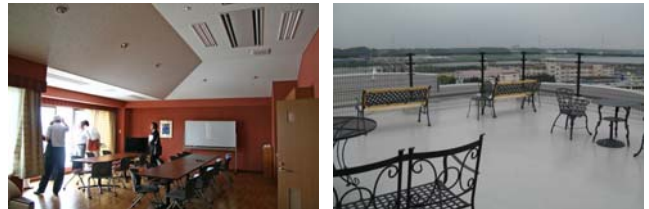


그림 16. 직원 라운지와 옥상 휴식공간

개호보험 실시 이후 이전보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크레오에서는 입주자들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가족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7. 세탁실

가족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4층에 마련된 세탁실에서 동전을 넣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들이 입주자들의 케어와 참여함으로 시설과 지역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데, 각 실의 냉난방을 개별 방식으로 하여, 개

개인이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온도 조절이 가능하게 하면서 시설로는 별도의 광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일본 의료법인 운영 시설의 변화와 국내 노인전문병원의 환경

일본의 최근 주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인 노인 보건시설의 변화는 국내의 노인전문병원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노인요양형 병상이 폐지되고 노인보건시설도 특별양호홈과 동일한 유니트형의 환경을 구성할 것을 유도하는 개호보험법의 시설 기준은 의료법인 운영시설에서도 노인의 장기 거주에 필요한 주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의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주거로서의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고 일반 병원의 환경과 유사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내의 노인병원 계획에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